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조인철 · 김병주
박용갑 · 박균택 · 임호선
김태선 · 이개호 · 권향엽
이상휘 · 김주영 · 손명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,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·징수될 수 있어,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한편,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(이하 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”이라 함)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.

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(부담금) ① (생략)</p> <p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51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